



하늘부모님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

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19 (04308) 가정 행복국 Tel 02-3271-0502, Fax 02-3271-0509

문서번호: 세가한본 제2026-152호(가정 행복-21)
수 신: 신한국 교구장, 부교구장, 대교회장, 교회장
참 조: 교구 사무장, 교구가정부장
발 신: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행복국
발 신 일: 천일국 14년 천력 6월 8일(2026년 7월 21일)
제 목: '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 성화식 규정' 안내

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.

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식구가 성화하였을 때 참부모님 휘호 하사 및 협회성화식 집행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해주시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목적

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식구가 성화하였을 때 협회차원의 성화식(원전식 포함)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2. 협회 성화식 대상자 및 기본 자격

가. 대상자

- 1) 참부모님의 특별한 말씀(재가)이 있는 경우
- 2) 36가정, 5대 성인가정
- 3) 전직 협회장(원로급에 해당하는 가정)
- 4) 10년 이상 공직을 수행한 자로서 현직 중에 성화한 자
- 5) 협회 발전에 현격한 공로를 세운 자

나. 기본 자격

- 1) 3대 천법(심정유린, 공금횡령, 혈통문제)을 위배하지 아니할 것
- 2) 천보등재가정
- 3) 소속 교회의 예배, 헌금 등 모범적 신앙생활을 영위한 자

3. 참부모님 휘호 대상자 및 기본자격

가. 대상자

- 1) 협회 성화식 대상자
- 2) 72가정, 124가정, 430가정 중 공로가 인정된 자
- 3) 국가메시아 및 원로목회자 중 공로가 인정된 자
- 4) 33년 이상 국내외 공직을 수행한 전현직 공직자
- 5) 협회 발전에 현격한 공로를 세운 자

나. 기본자격

- 1) 3대 천법(심정유린, 공금횡령, 혈통문제)을 위배하지 아니할 것
- 2) 천보등재가정
- 3) 소속 교회의 예배, 헌금 등 모범적 신앙생활을 영위한 자

4. 협회성화식 신청 및 진행 절차

가. 서류제출: 심의를 위해 성화한 자의 공적조서가 교회 및 교구를 거쳐 협회에 제출되어야 함

나. 심의 및 결정: 협회 중앙위원회 심의, 참부모님 최종 재가 및 휘호 하사

다. 실무 집행: 사안 발생 즉시 '성화위원회(위원장: 협회장)'를 구성하여 유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협의 및 집행

5. 문의: 가정행복국 권연향 부장(02-3271-0502)

첨부: 한국협회 성화식 규정 전문 1부, 공적조서 양식 1부. 끝.

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협회장 송용찬

